의 안 번 호	제482호
의결연월일	2022. 4. 4.

-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연장 동의안 -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❍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03. 28. 예산군수

❍ 회 부 일 자 : 2022. 03. 28. 행정복지위원회

❍ 상 정 일 자 : 2022. 04. 04.
제279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 (재무과장 : 복준수)

가. 제안이유

❍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 및 영업이 제한된 지방세 중과세대상 고급 오락장(유흥주점)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감면대상

1) 착한임대인: 임대·임차인 간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하고 임차인에게 과세기준일(6.1) 이전 상반기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해준 건축물 재산세 납세의무자

2) 고급오락장(유흥주점):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제한된 고급 오락장 중 유흥주점의 재산세 납세의무자

○ 감면세목 및 내용

1) 착한임대인

가) 감면세목: 정기분 재산세(7월 건축물)

나) 감 면 액: 감면율 계산방식에 따라 최고 75% (50만원 한도) 감면

다) 감면예상액 : 8건 896천원(2021년 기준)

- 2020년: 11건 1,455천원, 2021년: 8건 896천원

2) 고급오락장

가) 감면세목 : 정기분 재산세(7월 건축물, 9월 토지)

나) 감 면 율

(1) 건축물: 중과세(4%) ⇨ 일반과세전환(0.25%)

(2) 토 지: 중과세액의 50%감면

다) 감면예상액 : 14업소 62,202천원(2021년 기준)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: 박 우 현)

○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영업이 제한된 지방세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(유흥주점)에 대한 재산세를 지난해와 같이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고급오락장의 경우에는 통상 임대계약 시 중과세되는 세금은 영업주가 부담하도록 약정하고 있으므로, 영업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감면 사실을 영업주에게도 안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,

○ 동의안의 목적과 내용이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므로,

○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질의·답변요지

○ 없　　음

5. 토 론 요 지

○ 없　　음

6. 심 사 결 과

○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　　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　　음